

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8. 5. 11.(금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허 욱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표철수 상임위원 (4인)
4. 불참위원 : 고삼석 상임위원 (1인)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2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보고

- 제21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- 제21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⑦ 의결사항

가. 「2017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」 (2018-22-113)

-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'2017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(안)'을 오광혁 편성평가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총 156개사(363개 방송국)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대상, 평가기준, 평가절차, 평가결과의 활용 및 추진 일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함

⑧ 보고사항

가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

- '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'에 대해 문현석 방송기반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홈쇼핑 방송사의 허위, 과장 등의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기준을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,
 - 홈페이지 게시방법 및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하며 게시·통지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 일부 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접수함
- ※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,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의무를 신설한 「방송법」 개정('18.3.13 공포)

9. 기 타

가. 현안 관련 논의사항

- o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관리감독 관련 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해 상임위원 간 논의함

나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회의는 5월 16일(수)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0:31)